

행정위임입법

2015 No. 51

보건 및 안전

건설(설계관리)규칙(CDMR) 2015

제정일 2015년 1월 22일
의회 제출일 2015년 1월 29일
발효일 2015년 4월 6일

영국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 장관은 작업장 보건안전법(1974)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a)(이하 "보건안전법(1974)"라 함) 15(1)절, 15(2)절, 15(3)절(a) 및 (c), 15(5)절(a), 15(8)절 및 15(9)절, 80(1)절 및 80(2)(c)절, 82(3)(a)절 그리고 별표(Schedule) 3의 1(1)항 및 (2)항, 6에서 12항, 14항, 15(1)항, 16항, 18항, 20항 및 21항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본 규칙은 보건안전법(1974)(b) 11(3)절에 의거하여 영국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이하 "보건안전청"이라 함)이 노동연금부 장관에게 제출한 입법안에 대한 수정 없이 발효된다.

보건안전청은 입법안 제출 이전에 보건안전법(1974)(c)의 50(3)절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합한 조직과 협의 과정을 거친다.

노동연금부 장관은 본 규칙 별표 5의 표에 제시된 수정된 행정규칙입법 가운데 별 표시(*)가 붙은 것들은 보건안전법(1974)의 80(1)절의 목적상 편리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노동연금부 장관은 이러한 수정사항과 관련하여 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보건안전법(1974)의 08(4)(d)절의 목적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a) 1974 c.37. 15(1)절은 고용보호법(1975)(Employment Protection Act 1975) 별표 15의 6항으로 대체되었으며 S.I. 2002/794에 의해 개정되었다. 15(2) 및 (3)절은 에너지법(2013)(Energy Act 2013)(c.32) 별표 12의 1항 및 5항에 의해 개정되었다.

(b) 11(3)절은 S.I. 2008/960에 의해 삽입되었다.

(c) 50(3)절은 고용보호법(1975) 별표 15의 16항, S.I. 2008/960, 보건복지법(2012)(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c.7) 7절의 4항 및 6항, 에너지법(2013) 별표 12의 1항 및 11(1)항에 의해 개정되었다.

(d) 80(4)절은 S.I. 2002/794에 의해 개정되었다. (e) S.I. 2014/3248.

PART 1

개요

인용 및 효력발생

1. 본 규칙은 “건설(설계관리)규칙(2015)”라 명명하며, 광산규칙(2014)(Mines Regulations 2014) 시행 직후인 2015년 4월 6일부로 발효된다.

해석

2.—(1) 본 규칙에서는—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는 “보건안전법(1974)”이라 한다.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07은 “건설(설계관리)규칙(2007)”(a)이라 한다.

“관리규칙”은 “작업장 보건안전관리규칙(1999)(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b)를 의미한다.

“사업”은 (영리, 비영리를 불문한) 어떠한 유형의 업무나 사업 또는 일을 의미한다. “발주자”란 공사를 위탁한 자를 의미한다.

“건설단계”는 어떠한 공사의 건설작업이 시작될 때 개시되며 해당 공사의 건설작업이 끝날 때 종료되는 기간이다.

“건설단계계획”은 본 규칙 12조 또는 15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계획을 의미한다.

“건설현장”에는 건설작업이 현재 진행 중인 장소 또는 노무제공자들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는 포함되지만, 건설현장 내에서 건설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따로 떼어놓은 작업장은 제외된다.

“건설작업”이란 모든 유형의 건물, 토목, 건축 건설 작업의 수행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a) 구조물의 건설, 변경, 용도변경, 준비, 연결, 수선, 수리, 유지, 인테리어, 또는 그 외 유지관리 (물이나 고압 연마재 또는 부식성 물질이나 독성 물질을 사용한 청소 작업 포함), 분리, 철거, 또는 해체

(b) 현장의 정화, 탐사, 조사 (단, 현장 측량은 제외), 굴착을 포함한 (단, 건설 이전의 고고학적 조사는 제외) 의도한 구조물에 대한 준비 및 최종 시점에서 사용이나 점유를 목적으로 한 해당 현장이나 구조물의 정화 또는 준비

(c) 현장에서 조립 이전 상태의 구성요소들의 조립을 통한 구조물의 구축 또는 현장에서 조립 이전 상태의 구성요소들이 분해 직전에 구조물을 구축한 상태에서 이들 조립 이전 상태의 구성요소들의 분해

(a) S.I. 2012/632, 2013/1471, 2013/1666 및 2014/469에 의해 개정된 S.I. 2007/320

(b) S.I. 1999/3242는 S.I. 2003/2457, 2007/320, 2010/93 및 2013/1667에 의해 개정되었음. S.I. 1999/3242는 잉글랜드 및 웨일스 지역의 경우 S.I. 2005/1541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스코틀랜드 지역의 경우 S.S.I. 2006/457에 의해 개정되었다.

(d) 구조물의 제거, 또는 구조물의 철거나 해체를 통해 생성된 산물이나 폐기물의 제거, 또는 분해 직전에 구조물을 구축한 상태인 조립되지 않은 구성요소들의 해체를 통해 생성된 산물이나 폐기물의 제거

(e) 기계, 전기, 가스, 압축공기, 수압, 통신, 컴퓨터 등의 설치, 연결, 유지관리, 보수, 제거 또는 일반적으로 구조물 내에서 또는 구조물에 고정하는 형태의 유사 서비스

하지만 건설작업에는 광물자원의 탐사나 추출 또는 해당 탐사나 추출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시행되는 준비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도급자”는 건설작업의 진행 또는 진척 과정에서 건설작업을 수행, 관리, 또는 통제하는 자(국내 이외의 발주자 포함)를 의미한다.

“설계”란 구조물과 관련된 도면, 상세설계, 시방서, 수량서(물품 또는 물질 시방서 포함) 및 설계 목적상 추산된 것을 의미한다.

“설계자”란 구조물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특정 구조물에 부합하도록 의도된 제품이나 기계 시스템 또는 전기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사업의 진행 또는 진척 과정에서 다음의 행동을 하는 자(여기에는 발주자, 도급자, 또는 본 규칙에 언급된 다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a) 설계를 작성하거나 수정한다. 또는,

(b)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자에게 설계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도록 조치하거나 지시한다.

그리고 설계가 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자에 의해 작성되었을 경우 그 자는 설계를 작성한 자로 여겨진다.

“사적발주자”란 해당 발주자의 사업의 진행 또는 진척과 관계없는 공사를 위탁한 발주자를 의미한다.

“굴착”에는 모든 유형의 토공, 터파기, 우물, 터널, 지하작업 등이 포함된다.

“일반예방원칙”은 본 관리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일반예방원칙을 의미한다.

“보건안전파일”은 본 규칙 12(5)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파일을 의미한다.

“보건안전청 감독관”은 그 의미가 보건안전법(1974)(a) 53(1)절에 명시된 범위 내인 감독관을 의미한다.

“적재구역”은 적재 및 하역을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작업장소”는 작업 중인 자가 건설작업을 위해 또는 건설작업으로 인해 유래되거나 건설작업과 관련 있는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건설전 정보”는 발주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발주자가 합당하게 획득할 수 있거나 발주자를 위해 획득할 수 있는 정보로, 건설작업과 관련이 있으며 적절한 수준의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관련된 위험과 비례한 정보이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a) 다음에 관한 정보—

(i) 공사

(ii) 공사 계획 및 관리

(iii) 보건 및 안전상의 위험, 여기에는 설계 및 건설상의 위험과 이들 위험에 대한 대처 방안이 포함된다.

(b) 현존하는 보건안전파일에 담긴 정보

“건설전 단계”는 공사를 위한 설계 또는 준비 작업이 진행되는 기간으로 건설단계 동안 지속될 수 있다.

(a) 보건안전법(1974)의 53(1)절은 여러 번 개정된 바 있으나 본 규칙과 관련된 부분은 없다.

“원도급자”는 본 규칙 12조에서 14조까지 명시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5(1)(b)조에 따라 임명된 도급자를 의미한다.

“원설계자”는 본 규칙 11조 및 12조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5(1)(a)조에 따라 임명된 설계자를 의미한다.

“공사”는 건설작업을 포함하는 또는 포함하도록 의도된 공사를 의미하며 건설단계 종료시까지 공사와 연계된 모든 계획, 설계, 관리, 또는 기타 작업을 포함한다.

“현장규칙”은 특정 건설현장을 위해 작성된 규칙으로 보건 목적상 또는 안전 목적상 필요한 규칙을 의미한다.

“구조물”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a) 건물, 목재, 석조, 철근 콘크리트 또는 보강된 콘크리트 구조물, 철길 또는 측선, 전차선로, 부두, 항구, 배운항 항로, 터널, 수갱, 다리, 고가교, 급수시설, 저수지, 파이프 또는 파이프라인, 케이블, 송수로, 하수관, 하수도, 가스탱크, 도로, 비행장, 방파제, 하천공사, 배수공사, 토공, 오수 처리용 인공 못, 댐, 벽, 잠함(케이슨), 기둥, 탑, (고압선용) 첩탑, 지하탱크, 흙막이 구조물 또는 천연기념물 보존 또는 변형을 위해 고안된 구조물, 공장

(b) 본 조 (a)항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구조물

(c) 거푸집공사, 가설공사, 비계 또는 건설작업 기간 동안 지원 또는 접근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또는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기타 구조물

그리고 구조물이란 말은 구조물의 일부를 포함하는 말이기도 하다.

“교통로”는 보행자의 왕래나 차량 통행을 위한 길을 의미하며, 출입구, 입구, 적재 구역, 또는 경사로 등을 포함한다.

“차량”에는 이동이 가능한 작업장비가 포함된다.

“작업장비”는 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 기기, 기구, 도구, 설비 등을 의미한다(장비가 작업 전용으로만 사용되지는 여부는 관계없다).

“작업일”은 건설작업이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한다.

“작업장”은 건설현장 이외의 “작업장 건강보건복지규칙(1992)(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2(1)조에 명시된 의미에 속하는 작업장을 의미한다.

(2) 본 규칙에서 언급된 계획, 규칙, 문서, 보고서, 또는 사본 등은 다음의 성격을 가진 사본 또는 전자식 버전을 포함한다.

(a) 필요시에 검색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b) 손실 또는 허가받지 않은 간섭으로부터 보호받는다.

그레이트브리튼 내 및 그레이트브리튼 이외 지역에서의 적용

3. 본 규칙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a) 그레이트브리튼. 그리고,

(b) 보건안전법(1974) (그레이트브리튼 이외 지역에서의 적용) 명령(2013)(b)의 9조 및 11(1)(a)조의 효력에 의거하여 보건안전법(1974) 1절에서 59절까지 및 80절에서 82절까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그레이트브리튼 이외의 장소 및 활동에 적용된다.

(a) S.I. 1992/3004; 본 규칙 2(1)조의 “작업장”의 정의는 S.I. 2002/2174에 의해 개정되었다.

(b) S.I. 2013/240.

PART 2
발주자의 의무

공사 관리와 관련된 발주자의 의무

- 4.—(1) 발주자는 공사 관리를 위해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여기에는 충분한 시간 및 다른 자원의 할당 또한 포함된다.
- (2)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조치가 적합하다 할 수 있다.
- (a) 건설작업이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공사의 영향을 받는 자의 보건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일 없이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 (b) 건설작업을 수행하는 자와 관련하여 본 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시설이 제공된다.
- (3) 발주자는 공사 진행 내내 이들 조치가 유지되고 검토되도록 해야 한다.
- (4) 발주자는 공사 진행을 위해 임명된 모든 설계자 및 도급자 또는 임명 대상으로 고려되는 모든 설계자 및 도급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건설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5) 발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 (a) 건설단계 개시 이전에, 만일 도급자가 하나뿐일 경우 해당 도급자에 의해 아니면 원도급자에 의해, 건설단계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 (b) 원설계자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공사용 보건안전파일을 작성하게 한다.
 - (i) 본 규칙 12(5)조를 준수한다.
 - (ii) 새로운 관련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이따금 적절한 시기에 개정된다. 그리고,
 - (iii) 관련 법적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누구든 필요한 자가 검사 목적으로 입수할 수 있다.
- (6) 발주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a) 원설계자는 본 규칙 11조 및 12조에 명시된 원설계자로서의 다른 의무들을 준수한다. 그리고,
 - (b) 원도급자는 본 규칙 12조에서 14조까지에 명시된 원도급자로서의 다른 의무들을 준수한다.
- (7) 만일 발주자가 구조물에 대한 발주자의 지분을 청산할 경우, 발주자는 발주자의 구조물에 대한 지분을 획득한 자에게 보건안전파일을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그 획득한 자가 보건안전파일의 본질과 목적을 알게 함으로써 본 조 (5)(b)(iii)항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한다.
- (8) 한 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둘 이상일 경우,
- (a)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발주자는 본 규칙의 목적상 유일한 발주자(들)로서 대우를 받기로 서면 합의한다. 그리고,
 - (b) 본 항 (c)호에 명시된 의무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본 조 (a)항에 합의된 발주자(들)만이 본 규칙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의해 부가된 의무를 지게 된다.
 - (c) 다음에 명시된 의무는 모든 발주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이다.
 - (i) 본 규칙 8(4)조, 그리고
 - (ii) 본 규칙 8(6)조 및 본 조 (4)항. 단, 해당 의무가 발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정보와 관련되어 있을 정도 내에서만 그러하다.

원설계자 및 원도급자의 임명

- 5.—(1) 도급자가 둘 이상일 경우, 또는 언제든지 둘 이상의 도급자가 한 건의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합당한 예상이 가능할 경우, 발주자는 서면으로 다음에 명시된 자를 임명해야 한다.

- (a) 원설계자로서 건설전 단계 전반을 통제하는 설계자. 그리고,
- (b) 원도급자로서의 도급자.
- (2) 원설계자와 원도급자의 임명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경우든, 건설단계 개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3) 만일 발주자가 원설계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본 규칙 11조 및 12조에 명시된 원설계자로서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 (4) 만일 발주자가 원도급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본 규칙 12조에서 14조까지에 명시된 원도급자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신고

6.—(1)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작업 일정이 다음과 같을 경우 공사는 신고 대상이 된다.

- (a) 근무일이 30일을 초과하고 공사 시점과는 관계없이 노무제공자의 수가 20을 넘을 경우. 또는,
- (b) 총 인일이 500을 초과할 경우.
- (2) 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건설단계 개시 이전에 가능한 한 빨리 보건안전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 (3) 신고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a) 본 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세부사항이 담겨 있어야 한다.
 - (b)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건설작업에 종사한 모든 노무제공자가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알기 쉬운 방식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 (c) 필요하다면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 (4) 공사에 보건안전(철도 및 기타유도수송시스템에 대한 집행권자)규칙(2006)(Health and Safety (Enforcing Authority for Railways and Other Guided Transport Systems) Regulations 2006)(a) 3조의 효력에 의거하여 철도규제청(Office of Rail Regulation)이 집행권자 역할을 하는 종류의 건설작업이 포함될 경우, 발주자는 보건안전청 대신에 철도규제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 (5) 공사가 다음의 위치에 해당되는 장소나 다음에 위치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건설작업을 포함할 경우엔,
 - (a) 에너지법(2013)(Energy Act 2013)(b) 68절에 명시된 의미에 속하는 그레이트브리튼 내 원자력 부지.
 - (b) 보건안전(집행권자)규칙(1998)(Health and Safety (Enforcing Authority) Regulations 1998)(c) 2(1)조에 명시된 의미에 속하는 인가받은 군사 부지. 또는,
 - (c) (위 규칙의 2A조에 명시된 의미에 속하는) 새로운 원자력 건설부지.
 발주자는 보건안전청 대신에 원자력규제청(Office for Nuclear Regulation)에 신고해야한다.

(a) S.I. 2006/557. 보건안전(철도 및 기타유도수송시스템에 대한 집행권자)규칙 3조는 S.I. 2007/1573 및 2014/469에 의해 개정되었다.

(b) 2013 c.32.

(c) S.I. 1998/494. “인가받은 군사부지”의 정의 및 새 규칙 2A조는 S.I. 2014/469에 의해 보건안전(집행권자)규칙 2(1)조에 삽입되었다.

사적발주자에게 적용되는 사항

7.—(1) 발주자가 사적발주자일 경우, 본 규칙 4(1)조에서 4(7)조까지의 의무는 반드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한다.

- (a) 도급자가 하나 뿐인 공사의 도급자.
 - (b) 도급자가 둘 이상일 경우 공사의 원도급자. 또는,
 - (c) 원설계자가 해당 의무를 완수할 것이라는 서면 협정이 존재할 경우 원설계자.
- (2) 사적발주자가 본 규칙 5조에 따라 임명해야 할 자를 임명하지 못할 경우,
- (a) 공사의 건설전 단계를 통제하는 설계자가 원설계자가 된다.
 - (b) 공사의 건설단계를 통제하는 도급자가 원도급자가 된다.
- (3) 본 규칙 5(3)조와 5(4)조는 사적발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PART 3

보건안전의무 및 역할

전반적인 의무

8.—(1) 공사 진행을 위해 임명된 설계자 (원설계자 포함) 또는 도급자 (원도급자 포함)는 자신이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역할을 공사에 영향을 받는 사람의 보건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완수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식, 경험을 그리고, 만일 설계자 또는 도급자가 조직일 경우엔,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2) 설계자나 도급자는 본 조 (1)항에 언급된 조건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공사 진행을 위한 임명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

(3) 공사 진행을 위해 설계자나 도급자를 임명할 책임이 있는 자는 설계자나 도급자가 본 조 (1)항에 명시된 조건을 완수할 수 있을지 스스로 납득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본 규칙에 따른 의무를 지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동일한 현장이나 인접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와 관련이 있는 자와, 의무를 지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이가 해당 의무나 기능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정도까지, 협력해야 한다.

(5) 다른 이의 통제 하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보건이나 안전 또는 다른 이의 보건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6) 본 규칙에 의거하여 정보나 지침을 제공해야 하는 자는 해당 정보나 지침이 알기 쉬운 것이 되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7) 본 조 (3), (4), (6)항에 명시된 의무는, 사적발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 본 규칙 7(1)조에 명시된 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설계자의 의무

9.—(1) 설계자는, 발주자가 본 규칙에 의거하여 발주자 자신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와 관련된 작업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2) 설계자는 설계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의 보건이나 안전에

가해지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일반예방원칙 및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의 건설전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a) 건설작업을 수행하거나 건설작업에 영향을 받는 자.

(b) 구조물을 유지관리하거나 청소하는 자. 또는,

(c) 작업장으로 설계된 구조물을 이용하는 자.

(3) 만일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설계자는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

(a) 뒤이은 설계 과정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고, 만일 불가능할 경우엔, 위험을 통제한다.

(b) 원설계자에게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c) 보건안전파일에 적절한 정보가 담길 수 있도록 한다.

(4) 설계자는 발주자와 다른 설계자 및 도급자가 본 규칙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와 함께 구조물의 설계,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레이트브리튼 밖에서 작성되었거나 수정된 설계

10.—(1) 본 규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작업에 쓰이는 설계가 그레이트브리튼 밖에서 작성되었거나 수정되었을 경우,

(a) 설계를 의뢰한 자가 그레이트브리튼에 근거를 뒀을 경우엔 설계를 의뢰한 자는, 아니면

(b) 설계를 의뢰한 자가 그레이트브리튼에 근거를 둔 자가 아닐 경우엔, 공사의 발주자는

반드시 본 규칙 9조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2) 본 10조는 사적발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안전 관련 건설전 단계에서의 원설계자의 의무

11.—(1) 원설계자는 건설전 단계를 계획하고, 관리하며, 감시해야 하며,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공사가 보건 또는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일 없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건설전 단계동안 보건안전 관련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2) 본 조 (1)항에 명시된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리고 특히 다음의 경우

(a) 여러 가지 작업 관련 항목 또는 동시에 또는 연이어 이루어지게 될 작업 단계를 계획하기 위해 설계, 기술 및 조직 관련 사항이 결정 중에 있는 경우, 그리고,

(b) 이러한 작업 또는 작업 단계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추산하는 경우,

원설계자는 일반예방원칙 그리고, 관련 있을 경우엔, 건설단계계획 및 보건안전파일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3) 본 조 (1)항에 명시된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원설계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의 보건이나 안전에 가해지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식별해야 하며 제거하거나 통제해야 한다.

(a) 건설작업을 수행하거나 건설작업에 영향을 받는 자.

(b) 구조물을 유지관리하거나 청소하는 자. 또는,

(c) 작업장으로 설계된 구조물을 이용하는 자.

(4) 본 조 (1)항에 명시된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원설계자는 모든 설계자가 본 규칙 9조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5) 본 조 (1)항에 명시된 보건안전문제를 조정하는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원설계자는 공사

전 단계와 관련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이가 발주자와 원설계자 및 서로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원설계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본 규칙 4(4)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건설전 정보의 제공에 있어 발주자를 도와야 한다. 그리고,

(b) 원설계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사 진행을 위해 지명된 모든 설계자 및 도급자 또는 지명 대상으로 고려되는 모든 설계자 및 도급자에게 즉시 그리고 편리한 형태로 건설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7) 원설계자는 원설계자의 임명기간 동안 원도급자와 협력해야 하며 건설단계의 계획, 관리, 감시와 관련된 정보 및 건설기간 동안의 보건안전문제 조정과 관련된 정보를 원도급자와 공유해야 한다.

건설단계계획 및 보건안전파일

12.—(1) 건설전 단계 동안 그리고 건설현장 구축 이전에, 원도급자는 건설단계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단계계획이 수립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건설단계계획은 보건안전 관련 조치 및 필요시엔 건설현장에서 진행되는 산업활동이 고려된 건설현장 규칙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엔, 본 규칙 별표 3에 명시된 범주 가운데 최소한 하나에 속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단을 포함해야 한다.

(3) 원설계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 원설계자가 지니고 있는 건설단계계획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원도급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원도급자가 건설단계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a) 발주자로부터 획득한 건설전 정보

(b) 본 규칙 9(3)(b)조에 의거하여 설계자들로부터 획득한 정보

(4) 공사 진행 내내 원도급자는 건설단계계획이 이따금 적절하게 검토, 갱신 및 개정되도록 함으로써, 건설작업이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보건 또는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일 없이 수행되게끔 하는데 있어 건설단계계획이 지속적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게끔 해야 한다.

(5) 건설전 단계동안, 원설계자는 공사의 성격에 적합한 보건안전파일을 작성해야 하며, 파일에는 향후 진행될 공사기간 동안 모든 자의 보건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공산이 큰 공사관련 정보가 담겨있어야 한다.

(6) 원설계자는 보건안전파일이 작업관련 사항 및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을 고려할 수 있게끔 이따금 적절하게 검토, 갱신 및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

(7)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도급자는 원도급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보건안전파일과 관련이 있는 정보가 보건안전파일에 포함되기 위해 원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8) 만일 원설계자의 임명이 공사종료 이전에 끝날 경우, 원설계자는 원도급자에게 보건안전파일을 전달해야 한다.

(9) 본 조 (8)항에 따라 보건안전파일이 원도급자에게 전달되었을 경우, 원도급자는 보건안전파일이 작업관련 사항 및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을 고려할 수 있게끔 이따금 적절하게 검토, 갱신 및 개정되도록 해야 한다.

(10) 보건안전파일을 발주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은 공사종료 시엔 원설계자의 몫이고 원설계자가 부재할 경우엔 원도급자의 몫이다.

건설단계에서의 보건안전과 관련된 원도급자의 의무

13.—(1) 원도급자는 건설단계를 계획하고, 관리하며, 감시해야 하며,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건설작업이 보건 또는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일 없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건설단계 동안 보건안전 관련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2) 본 조 (1)항에 명시된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리고 특히 다음의 경우

(a) 여러 가지 작업 관련 항목 또는 동시에 또는 연이어 이루어지게 될 작업 단계를 계획하기 위해 설계, 기술 및 조직 관련 사항이 결정 중에 있는 경우, 그리고,

(b) 이러한 작업 또는 작업 단계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추산하는 경우 원도급자는 일반예방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3) 원도급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계속 도급계약을 맺은 도급자를 포함하여) 도급자들 간의 협력을 조직한다.

(b) 보건안전 관련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의 도급자들에 의한 이행을 조정한다.

(c) 고용주들 및, 노무제공자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영업자들이 다음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

(i) 특히 Part 4의 조항을 준수하는데 있어, 일반보호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그리고,

(ii) 필요시엔, 건설단계계획을 따른다.

(4) 원도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a) 건설현장에 대한 적합한 소개가 이루어진다.

(b) 인가받지 않은 자가 건설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c) 본 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는 시설이 건설단계 내내 제공된다.

(5) 원도급자는 원설계자의 임명기간 동안 원설계자와 협력해야 하며 건설전 단계의 계획, 관리, 감시와 관련된 정보 및 건설전 기간동안의 보건안전문제 조정과 관련된 정보를 원설계자와 공유해야 한다.

원도급자의 노무제공자와의 협의의무 및 교류의무

14. 원도급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건설작업에 종사하는 원도급자 및 노무제공자들이 노무제공자의 보건과 안전 및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의 유효성을 개발시키고, 증진하며, 점검하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 조치를 유지한다.

(b) 공사와 관련하여 이들 노무제공자들의 보건, 안전, 또는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노무제공자거나 노무제공자들의 대표가 고용주와 유사한 방식으로 협의를 갖지 않은 한, 노무제공자거나 노무제공자들의 대표와 적절한 시기에 협의한다.

(c) 이들 노무제공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의 대표가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현장 노무제공자들의 보건, 안전, 또는 복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원도급자가 갖고 있거나 또는 본 규칙에 따라 원도급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검사하거나 사본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i) 공개로 인해 국가안보에 해가 되는 정보.

(ii) 원도급자가 법률로 인해 금지된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공개할 수 없는 정보.

(iii) 명확히 개인에 한정된 정보로, 해당 개인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공개할 수 없는 정보.

(iv) 공개 결과 작업 과정에서 보건, 안전, 복지에 미치는 영향 이외의 다른 이유로 인해 원도급자의 일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가 다른 자에 의해 원도급자에게 제공되었을 시 바로 그 다른 자의 일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정보

(v) 원도급자가 법적 절차를 밟거나, 진행하거나, 밟을 목적으로 획득한 정보

도급자의 의무

15.—(1) 본 규칙에 의거하여 발주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발주자가 인지하고 있음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건설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2) 도급자는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건설작업이 보건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일 없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도급자의 통제 하에서 도급자에 의해 또는 노무제공자에 의해 수행되는 건설작업을 계획하고, 관리하며, 감시해야 한다.

(3) 한 건의 공사를 진행하는 도급자의 수가 둘 이상일 경우, 도급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 원설계자나 원도급자가 내린 지시. 그리고,

(b) 건설단계계획의 일부로 해당 공사에 대한 도급자의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

(4)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도급자가 단 하나일 경우, 도급자는 다음의 경우 일반예방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a) 여러 가지 작업 관련 항목 또는 동시에 또는 연이어 이루어지게 될 작업 단계를 계획하게 위해 설계, 기술 및 조직 관련 사항이 결정 중에 있는 경우, 그리고,

(b) 이러한 작업 또는 작업 단계를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추산하는 경우

(5)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도급자가 단 하나일 경우, 도급자는 건설현장 구축 이전에 가능한 한 빨리 건설단계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단계계획이 수립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건설단계계획은 본 규칙 12(2)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7) 도급자는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보건안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할당된 임무를 이행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기술, 지식, 교육, 경험을 갖추고 있거나 갖추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은 사람을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고용하거나 임명해서는 안 된다.

(8) 도급자는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각 노무제공자에게 적절한 감독과 지침 및 정보를 제공하여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건설작업이 보건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일 없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9) 제공된 정보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 원도급자에 의해 미리 제공되지 않은, 건설현장에 대한 적절한 소개

(b) 보건안전에 심각하고 급박한 위험이 닥쳤을 경우 따라야 할 절차

(c) 다음에 해당되는, 보건안전에 가해지는 위험에 대한 정보

(i) 본 관리규칙 3조에 의거하여 위험평가를 통해 식별된 위험

(ii) 다른 도급자의 일로부터 유래된 위험 또는 노무관리자들을 통제하는 도급자라면 합당한 수준에서 알고 있어야 할 위험. 그리고,

(d) 노무제공자들이 관련 법 조항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정보.

(10) 도급자는 인가받지 않은 자가 건설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

(11) 도급자는,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본 규칙 별표 2에 명시된 요건이 도급자나 도급자의 통제 하에 있는 노무제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이들 요건이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PART 4

모든 건설현장에서 준수되어야 할 일반요건

Part 4의 적용

16.—(1) 본 Part는 오로지 건설현장에만 적용된다.

(2) 건설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자는, 본 Part에 명시된 요건이 도급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도급자의 통제 하에 있는 노무제공자 또는 도급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노무제공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3) 작업 중인 개인이 건설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통제하는 사적발주자는, 본 Part에 명시된 요건이 사적발주자의 통제 범위 내에 놓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한,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작업현장 안전구역

17.—(1)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장소로 적절한 그리고 충분히 안전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다음에 해당되는 장소로부터 적절한 그리고 충분히 안전한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a) 모든 건설현장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건설현장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작업 중인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다른 모든 장소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b) 건설작업이 수행 중인 모든 장소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이들 장소로부터 출발하여 노무제공자들이 건설현장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장소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2) 건설현장은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현장에서 작업 중인 사람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건강에 위험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3)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본 조의 (1)항 또는 (2)항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건설현장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는 아무도 그런 건설현장에서 출발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그런 건설현장에 접근하려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건설현장은 충분한 작업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작업공간에서 사용될 공산이 큰 필요 작업장비를 고려하면서, 작업공간에서 작업하는 자 또는 작업공간에서 작업할 공산이 큰 자에게 적합한 방향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질서 및 현장 보안

18.—(1) 건설현장의 각각의 부분은,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고, 건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합당한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

다.

(2) 보건안전상의 이익에 따라 필요할 경우, 건설현장은,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리고 위험 수준에 따라서, 다음 두 요건 중 하나 또는 두 요건 모두를 준수해야 한다.

(a) 적절한 표시를 통해 현장 주변의 식별이 가능하고 그 범위 또한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어야 함. 또는,

(b) 울타리가 쳐져 있다.

(3) 만일 못(또는 이와 유사한 날카로운 물체)이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면 못이 튀어나온 상태의 목재나 다른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물체는)

(a) 절대로 건설작업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또는,

(b) 어디에도 놔두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안정성

19.—(1) 사람에게 가해지는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만일 건설작업을 수행한 관계로 새로운 구조물이나 기존의 구조물이 다음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새로운 구조물이나 기존의 구조물이 붕괴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구조물이 불안정해 짐. 또는,

(b) 일시적으로 취약하거나 불안정한 상태에 놓임.

(2) 부벽, 일시적인 지지대, 일시적인 구조물 등은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부벽, 일시적인 지지대, 일시적인 구조물에 가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설계되어야 하고 설치되어야 하고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b) 설계되고, 설치되고, 유지관리되는 바대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되어야만 한다. (3) 사람에게 위험을 가할 정도의 하중이 구조물에 가해져서는 안 된다.

철거 또는 해체

20.—(1) 구조물의 철거 또는 해체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니면 예방의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엔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차원에서 가능한 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2) 이와 같은 철거 또는 해체를 위한 조치는 철거 또는 해체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서면으로 기록이 되어야 한다.

폭발물

21.—(1)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폭발물은 탈 없이 안전하게 저장되고, 수송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2) 누구도 폭발 또는 폭발로 인해 돌출되거나 날아가는 물체로 인한 위험이나 부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합하고 충분한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만 폭발물의 사용이나 점화가 가능하다.

굴착

22.—(1)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지지대나 경사말뚝의 제공을 포함하여, 사람에게 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굴착지 또는 굴착지의 일부가 붕괴되지 않는다.

(b) 굴착지의 벽 또는 지붕을 구성하는 재료 또는 굴착지에 인접한 재료가 이탈하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c) 이탈하거나 떨어진 재료로 인해 사람이 굴착지에 묻히거나 갇히지 않는다.

(2) 사람이나 작업장비 또는 쌓아둔 재료가 굴착지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합하고 충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 굴착지의 일부 또는 굴착지에 인접한 지면이 작업장비나 재료로 인해 과도한 하중에 시달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적합하고 충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4)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면 본 조 (1)항에 따라 지지대나 경사말뚝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굴착지에서 건설작업이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a) 굴착지 그리고 굴착지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장비 및 재료가 다음의 시기에 책임자에 의해 검사를 받음.

(i) 작업이 수행될 교대근무시간 시작 시점.

(ii) 굴착지의 강도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큰 상황 발생 이후. 그리고, (iii) 재료가 의도치 않게 떨어지거나 이탈한 이후. 그리고,

(b) 검사를 수행하는 이가 굴착지에서 건설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고 있음에 만족하였음.

(5) 검사를 수행하는 이가 검사 수행의 대상이 되는 이에게 자신이 (본 규칙 24(1)조에 의거하여) 만족하지 못한 점을 알려줬을 경우, 굴착지에서의 건설작업은 만족하지 못한 점이 만족스럽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잠함과 케이슨

23.—(1) 잠함 또는 케이슨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적합한 설계와 구조를 갖춰야 한다.

(b) 만일 물이나 재료가 들어올 경우 노무제공자들이 피신하거나 탈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채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c) 제대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2) 잠함 또는 케이슨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건설작업의 수행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a) 잠함이나 케이슨 그리고 잠함이나 케이슨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장비 및 재료는 다음의 시기에 책임자에 의해 검사를 받음.

(i) 작업이 수행될 교대근무시간 시작 시점.

(ii) 잠함 또는 케이슨의 강도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큰 상황 발생 이후. 그리고,

(b) 검사를 수행하는 이가 잠함 또는 케이슨에서 건설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고 있음에 만족하였음.

(3) 검사를 수행하는 이가 검사 수행의 대상이 되는 이에게 자신이 (본 규칙 24(1)조에 의거하여) 만족하지 못한 점을 알려줬을 경우, 잠함 또는 케이슨에서의 건설작업은 만족하지 못한 점이 만족스럽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검사보고서

24.—(1) 본 규칙 22조 또는 23조에 의거하여 검사를 수행하는 자가 검사 대상 장소에서 건설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지 못한 관계로 만족을 하지 못 했다면, 그 검사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검사 수행의 대상이 되는 이에게 검사가 완료된 시점의 교대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해 알려줘야 한다.

(b)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i) 검사 수행의 대상이 된 이의 성명과 주소.

(ii) 검사대상이 된 건설작업 장소의 위치.

(iii) 검사 대상이 된 건설작업 장소에 대한 또는 그 장소의 일부에 대한 기술 (작업장비 및 재료 포함).

(iv) 검사일 및 시간.

(v) 사람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식별된 문제의 세부 사항.

(vi) 본 (b)항 (v)호에 따라 식별된 문제의 결과로서 취해진 조치의 세부 사항. (vii)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행동의 세부 사항. 그리고,

(viii)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과 직책. 그리고,

(c) 보고서와 관련된 검사를 마친지 24시간 이내에 검사 수행의 대상이 되는 이에게 보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2) 검사를 수행한 이가 (직원으로서 아니면 이와는 다르게) 다른 이의 통제 하에서 검사작업을 수행했을 경우, 통제자는 검사를 수행한 이가 본 조 (1)항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하게 해야 한다.

(3) 검사 수행의 대상이 된 이는 반드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보건안전청 감독관이 다음의 장소 및 시기에 보고서 또는 보고서의 사본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 건설작업이 완료될 때 까지는 검사가 시행된 현장에서. 그리고,

(ii) 건설작업 완료 이후엔 3개월 동안. 그리고,

(b) 감독관이 이따금 필요로 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의 발췌본이나 사본을 감독관에게 보내야 한다.

(4) 본 규칙 22(4)(a)(i)조 또는 23(2)(a)(i)조에 의거하여 7일 동안 두 건 이상의 검사가 수행되었을 경우, 본 24조에 따르면 두 개 이상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

에너지 분배시설

25.—(1)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에너지 분배시설은 적합한 장소에 위치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고,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2) 머리 위를 지나는 전선으로 인해 건설작업에 위험이 존재할 경우,

(a) 전선이 위험지역 밖을 향하게 해야 한다. 아니면,

(b) 전기를 절연시키거나 필요시엔 접지시켜야 한다.

(3) 본 조 (2)(a)항 또는 (2)(b)항의 준수가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될 수 없다면,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과 함께 적합한 경고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a) 필요 없는 작업장비를 배제하는데 적합한 장벽.

(b) 차량이 전선 아래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현수형태의 보호장치. 또는, (c)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수단.

(4) 지중전선으로 인해 또는 지중전선이 손상을 입거나 교란됨으로써 보건이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건설작업은 위험예방을 위해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본 조에 의거하여 준수하도록 요구되는 조치를 포함하여) 적합하고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

기 전까지는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익사예방

26.—(1) 건설작업 과정에서 사람이 물이나 다른 액체에 빠짐으로서 익사할 위험이 있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위해 적합하고 충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a)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사람이 빠지는 것을 예방한다.

(b) 빠졌을 경우 익사할 위험을 최소화 한다. 그리고,

(c) 적합한 구조장비가 제공되고, 유지관리되며, 필요시엔 사용됨으로서, 사람이 빠졌을 경우 즉각 구조될 수 있게 한다.

(2) 작업장소로 또는 작업장소로부터 선박을 통해 수송된 사람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적합하고 충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 작업장소로 또는 작업장소로부터 사람을 수송하는데 쓰인 선박의 과밀 또는 과적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교통로

27.—(1) 건설현장은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보행자 및 차량이 보건 또는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일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2) 교통로는 이용하는 사람 또는 차량에 적합해야 하고, 수가 충분해야 하고, 위치가 적합해야 하고, 크기가 충분해야 한다.

(3) 교통로가 다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합하고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엔 본 조 (2)항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 아니다.

(a) 보행자나 차량이 교통로 근방의 사람들의 보건이나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일 없이 교통로를 이용할 수 있다.

(b) 교통로로 이어지는 보행자용 문 또는 대문이 보행자가 안전한 장소로부터 접근하는 차량이나 장치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해당 교통로와 충분히 떨어져 있다.

(c) 차량과 보행자 간의 거리가 안전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떨어져 있다. 만일 충분히 떨어뜨리는 일이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될 수 없을 경우엔,

(i) 보행자 보호를 위한 다른 수단이 제공된다. 그리고,

(ii) 접근하는 차량으로 인해 협착되거나 끼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

(d) 적재구역에는 보행자 전용 출구가 최소 한 곳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e) 차량 우선으로 만들어진 대문을 보행자가 사용하는 것이 보행자에게 위험을 안겨다 줄 경우, 대문의 바로 근처에 보행자용 문이 최소 하나는 있어야 하며, 이 문은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가로막히지 않아야 한다.

(4) 각각의 교통로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보건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필요한 곳에는 적합한 신호로 표시되어야 한다.

(b)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그리고,

(c) 제대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5)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교통로가 가로막히는 곳 없이 충분한 간격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차량이 교통로를 이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차량

28.—(1) 차량의 의도치 않은 움직임을 예방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적합하고 충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해 사람이 위험에 처할 경우, 차량의 움직임으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경고를 발하기에 적합하고 충분한 조치가 다음 두 범주 가운데 한 쪽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또는 두 범주 모두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취해져야 한다.

(a) 차량의 운전자. 또는,

(b) 차량 또는 업무의 성격 때문에 운전자가 시야를 완전하기 확보하지 못하는 관계로 다른 이가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줄 경우엔,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

(3) 건설작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은 운전, 조작, 또는 견인되는 상태일 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상황에 맞춰 안전한 방식으로 운전되거나, 조작되거나, 견인된다. 그리고,

(b) 안전하게 운전되거나, 조작되거나, 견인될 수 있게끔 적재된다.

(4) 사람은 공사작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이 공사작업 목적으로 제공되는 안전한 장소 이외의 곳에서 공사작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탑승해서는 안 되며, 또는 탑승하도록 요구되거나 탑승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

(5) 사람은 자신을 위해 안전한 작업 장소가 제공 및 유지되지 않을 경우 묶여 있지 않은 재료를 적재하거나 하역하는 동안 차량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며, 또는 남아있도록 요구되거나 남아있는 것이 허용되어서도 안 된다.

(6) 차량이 굴착지나 구덩이 또는 물에 빠지지 않게 또는 제방이나 토공의 가장자리를 넘어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 적합하고 충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화재, 홍수, 질식으로 인한 위험 예방

29. 공사작업 수행 와중에 다음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의 위험을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예방하기 위해 적합하고 충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a) 화재 또는 폭발.

(b) 홍수. 또는,

(c) 질식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

비상절차

30.—(1) 건설현장의 보건 또는 안전상의 이익상 필요할 경우, 예측 가능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적합하고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엔 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는 건설현장 또는 현장의 일부로부터 필요한 대피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본 조 (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a)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유형.

(b) 건설현장의 특징 및 크기 그리고 건설현장에서의 작업 장소의 수와 위치.

(c) 사용 중인 작업장비.

(d) 언제든지 건설현장에 모습을 나타낼 공산이 큰 사람의 수. 그리고,

(e) 건설현장에 있을 또는 있을 공산이 큰 물질 또는 재료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적 특성.

(3) 본 조 (1)항에 의거하여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적합하고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a) 조치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 각각의 사람이 해당 조치에 친숙해 짐. 그리고,
- (b) 조치가 적절한 간격을 두고 이행되는 방식으로 검증됨.

비상로 및 비상출구

31.—(1) 건설현장의 인간의 보건 또는 안전상의 이익상 필요할 경우, 위험상황 발생 시 빠르게 안전한 장소로 도달할 수 있게끔 충분한 수의 적합한 비상로 및 비상출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본 규칙 30(2)조에 명시된 사항은 본 조 (1)항에 따른 대비를 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3) 비상로 또는 비상출구는 식별된 안전지역으로 가능한 한 똑바로 이어져야 한다.

(4) 비상로 또는 비상출구 및 비상로 또는 비상출구로의 접근을 가능케 하는 교통로는 가로막히는 일 없이 흰히 뚫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용 가능한 비상등을 갖춰야 한다.

(5) 각 비상로 또는 비상출구는 적합한 신호로 표시되어야 한다.

화재감지 및 소방

32.—(1) 건설현장의 인간의 보건 또는 안전상의 이익상 필요할 경우, 적합하고 충분한 소방 장비와 화재감지 및 경보 시스템이 적합한 장소에 제공 및 설치되어야 한다.

(2) 본 규칙 30(2)조에 명시된 사항은 본 조 (1)항에 따른 대비를 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

(3) 소방장비 또는 화재감지 및 경보 시스템은 적합한 간격에 따라 검사 및 검증되어야 하고 제대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4) 자동적으로 쓰이도록 설계되지 않은 소방장비는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5)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신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르는 소방장비의 올바른 사용법을 배워야 한다.

(6) 작업활동으로 인해 특정한 화재위험이 야기될 수 있을 경우, 적합한 교육 없이 작업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7) 소방장비는 적합한 신호로 표시되어야 한다.

맑은 공기

33.—(1) 공사현장 또는 접근로가 안전하고 보건 또는 안전에 어떤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충분한 양의 맑은 공기 또는 정화된 공기가 각 공사현장 또는 공사현장으로의 접근로에 제공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적합하고 충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본 조 (1)항의 사항을 준수하려는 목적상 사용되는 장치에는, 보건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필요하다면, 장치 고장을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경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온도 및 날씨보호

34.—(1) 작업시간 동안 실내 건설현장의 온도가 실내 건설현장의 사용 목적을 유념하면서 합당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적합하고 충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야외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인 사람들의 보건 또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건설현장은,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다음 사항을 유념하면서 약천후로부터의 보호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a) 건설현장의 사용 목적. 그리고,

(b) 현장에서 작업중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호복 또는 작업장비.

조명

35.—(1) 각 건설현장 및 각 건설현장으로 이어지는 접근로 및 교통로에는 적합하고 충분한 조명이 갖춰져야 하고,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조명은 자연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갖춰진 인공조명의 색은 보건목적 또는 안전목적으로 갖춰진 표지판 또는 신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인식을 부정적으로 변화시켜서는 안 된다.

(3) 주요 인공조명이 고장났을 시 사람의 보건이나 안전에 위험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적합하고 충분한 보조 조명이 갖춰져야 한다.

PART 5

일반사항

화재관련 집행

36. 건설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에 의해 점유된 지역 내에 위치한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아니면 점유된 장소의 일부가 되는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또는 건설작업에 관련된 활동과 관련하여, 본 규칙 30조 및 31조 (30조 및 31조가 화재와 연관 있을 경우) 및 32조에 대한 집행권자는 다음과 같다.

(a)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경우, 규제개혁(화재안전)명령(2005)(Regulatory Reform (Fire Safety) Order 2005)(a)가 적용되는 장소와 관련하여, 규제개혁(화재안전)명령(2005) 25조에 명시된 의미에 속하는 집행권자. 또는,

(b) 스코틀랜드의 경우, 화재(스코틀랜드)법(2005)(Fire (Scotland) Act 2005)(b)의 Part 5이 적용되는 장소와 관련하여, 화재(스코틀랜드)법(2005)의 61절에 명시된 의미에 속하는 집행권자.

(a) S.I. 2005/1541. 25조는 에너지법(2013)(c.32) 별표 12의 Part 5의 87항 및 88항에 의해 개정되었음. (b) 2005 asp 5. 61절은 경찰 및 화재개혁(스코틀랜드)법(2012)(Police and Fire Reform (Scotland) Act 2012)(asp 8)의 103(1)(a)(i) 및 (ii)절 그리고 별표 8의 Part 2에 의해, 에너지법(2013) 별표 12의 Part 5의 86항에 의해, 그리고 S.I. 2005/2060 및 S.I. 2008/960에 의해 개정되었음.

Reform (Scotland) Act 2012 (asp 8); paragraph 86 of Part 5 of Schedule 12 to the Energy Act 2013; S.I. 2005/2060 and S.I. 2008/960. 화재(스코틀랜드)법(2005) Part 3의 적용대상인 "관련장소"의 의미를 규정한 78절은 주택(스코틀랜드)법(2006)(Housing (Scotland) Act 2006)의 별표 6 및 7일 Part 1의 23항에 의해 그리고 S.I. 2005/2060 및 S.S.I. 2005/352, 2011/211, 2011/369 및 2012/332에 의해 개정되었음.

(c) OJ No L 245, 26.8.1992, p6-22.

경과규정 및 잠정규정

37. 잠정규정 및 경과규정에 해당되는 별표 4가 효력을 갖는다.

폐지 및 그에 따른 개정본

38.—(1) 건설(설계관리)규칙(2007)은 폐지된다.

(2) 별표 5에 명시된 개정본이 효력을 갖는다.

검토

39.—(1) 노동연금부 장관은 이따금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본 규칙 1조에서 36조까지의 검토를 수행한다.

(b) 검토에 대한 결론을 보고서에 담아낸다. 그리고,

(c) 보고서를 출간한다.

(2) 검토 수행에 있어 노동연금부 장관은, 해당한 한도 내에서, 임시 또는 이동식 건설현장에서의 최소한의 안전보건요건의 이행(본 규칙 1조에서 36조까지에 의거하여 이행되었음)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 92/57/EEC)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3) 특히 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a) 상기 규칙에 따라 확립된 규제체제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의도되는 목표를 설정한다.

(b) 이들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c) 이들 목표가 지속적으로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만일 적절하다면, 완화된 규제체제를 통해 목표가 어느 정도로 달성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4) 본 조에 따라 작성된 첫 번째 보고서는 본 규칙이 시행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5년이 다 되기 전에 출간되어야 한다.

(5) 본 조에 따른 보고서는 향후 5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출간된다.

노동연금부 장관이 서명함.

2015년 1월 22일

프로이트(Freud)

정무차관

노동연금부

별표 1

6조

6조에 의거하여 신고되어야 하는 세부사항

1. 신고 전달일.
2. 건설현장의 주소 또는 건설현장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기술
3. 건설현장이 위치한 지역을 관장하는 현지 당국의 명칭.
4. 공사 및 공사로 인해 수반되는 건설작업에 대한 간결한 기술.
5.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발주자의 상세한 연락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만일 가능하다면) 이메일 주소.
6.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원설계자의 상세한 연락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만일 가능하다면) 이메일 주소.
7.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원도급자의 상세한 연락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만일 가능하다면) 이메일 주소.
8. 건설단계의 시작일로 계획된 일자.
9. 본 규칙 4(1)조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의해 공사작업 기간으로 할당된 시간.
10. 건설단계 기간으로 계획된 시간.
11. 건설현장에서 작업이 가능하리라 추정된 최대 인원수.
12. 건설현장에서 작업할 것으로 계획된 도급자의 수.
13. 이미 임명된 도급자의 성명 및 주소.
14. 이미 임명된 설계자의 성명 및 주소.
15. 본 규칙에 따른 발주자로서의 의무를 발주자가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발주자가 서명한 또는 발주자를 대신하여 서명한 선언서.

별표 2

4(2)(b), 13(4)(c), 및 15(11)조

건설현장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복지시설

위생편의시설

- 1.—(1) 쉽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 적합하고 충분한 위생편의시설이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해야 한다.
- (2)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위생편의시설을 갖춘 방은 환기와 조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3)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위생편의시설 및 위생편의시설을 갖춘 방은 청결하고 질서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4) 위생편의시설을 갖춘 방은 남녀 따로 구분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단 이는 각각의 위생편의시설이 별도의 방에 위치해 있을 경우 또는 위치하는 한 그리고 별도의 방의 문이 안에서 잠글 수 있을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목욕시설

2.—(1) 작업의 성격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요구될 경우 샤워 또한 포함되는, 적당하고 충분한 목욕시설은,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해야 한다.

(2) 목욕시설은 다음의 장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a) 모든 위생편의시설의 바로 근처이며, 그 외 장소에서는 제공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또한,

(b) 본 별표 4항에 명시된 탈의실 근처. 그 외 장소에서는 제공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3) 목욕시설에는 다음의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a) 깨끗한 냉온수 또는 따뜻한 물의 공급 (합당한 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수돗물이 공급되어야 함).

(b) 비누 또는 그 외 적합한 세정수단. 그리고,

(c) 수건 또는 그 외 적합한 건조수단.

(4) 목욕시설을 갖춘 방은 환기와 조명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 목욕시설 및 목욕시설을 갖춘 방은 청결하고 질서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6) (7)호에 의거하여, 남녀 따로 별도의 목욕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단 이는 목욕시설이 하나의 방에 위치해 있으나 방문을 안에서 잠글 수 있고 방 안의 목욕시설은 한번에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7) (6)호는 손, 팔, 얼굴만을 씻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식수

3.—(1) 쉽게 접근 가능하고 적합한 장소에서 충분한 양의 건강에 좋은 식수가 제공되거나 입수 가능해야 한다.

(2) 보건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필요할 경우, 모든 식수 공급처는 눈에 띄기 쉽게 적절한 신호로 표시되어야 한다.

(3) 식수가 공급되는 지역에는 충분한 양의 적합한 컵 또는 식수용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단 이는 식수가 사람들이 쉽게 마실 수 있도록 물꼭지를 통해 공급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탈의실 및 사물함

4.—(1) 노무제공자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적당하고 충분한 탈의실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해야 한다.

(a) 공사작업의 목적상 특수복을 착용해야 함. 그리고,

(b) 보건 또는 예의상의 이유로 인해 탈의실 이외의 곳에서 특수복을 갈아입어서는 안 됨.

(2) 예의상의 이유로 인해 필요할 경우, 남녀별로 탈의실을 따로 두거나 탈의실을 따로 사용해야 한다.

(3) 탈의실은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a) 좌석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b) 필요시엔, 특수복 및 개인의복이나 개인물품을 말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적당하고 충분한 시설은, 필요시엔, 다음의 것들을 잠가놓고 보관할 수 있도록, 쉽게 접

근 가능한 장소에서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해야 한다.

(a) 집으로 가져가지 않은 특수복;

(b) 작업시간 동안 착용하지 않은 노무제공자 자신의 복장. 그리고, (c) 노무제공자 자신의 개인물품.

휴게시설

5.—(1) 적합하고 충분한 휴게실 또는 휴식공간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제공되거나 이용 가능해야 한다.

(2) 휴게실 또는 휴식공간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작업중인 사람들의 수에 맞춰 적절한 수의 탁자 및 등받이가 달린 의자가 갖춰져야 한다.

(b) 필요시엔, 작업 중인 임산부 또는 모유수유를 하는 수유모가 누워서 쉴 수 있기에 적합한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c) 식사를 조리하고 섭취할 수 있기에 적합한 설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d) 물을 끓일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e) 적절한 온도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별표 3

12(2)조

특정한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

1. 노무제공자들을 흠의 붕괴로 매몰시키거나, 습지에 빠지게 하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할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사용되는 작업이나 공정의 성격상 또는 작업 장소나 현장의 환경으로 인해 이러한 위험이 특히나 심화되는 작업.
2. 노무제공자의 보건 또는 안전에 특정한 위험을 가하는 성분으로 구성된 화학물질이나 생물학적물질 또는 법적으로 보건상의 안전성 감시가 수반되는 화학물질이나 생물학적물질로 인해 노무제공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작업
3. 전리방사선을 다루는 작업으로 전리방사선규칙(1999)(Ionising Radiations Regulations 1999)(a) 19조에 의거하여 통제지역 또는 감시지역의 지정이 요구되는 작업.
4. 고압선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노무제공자를 익사위험에 노출시키는 작업.
6. 우물, 지하토공, 터널 작업
7. 급기장치를 착용한 잠수부들이 수행하는 작업.
8. 압축공기환경 하의 케이슨에서 노무제공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
9. 폭발물 사용이 수반되는 작업.
10. 무겁고 조립되지 않은 구성요소들의 조립 또는 해체가 수반되는 작업.

(a) S.I. 1999/3232.

경과규정 및 잠정규정

1. 본 별표에서,
 “CDM(건설설계관리) 조정자”는 건설(설계관리)규칙(2007)의 14(1)조에 의거하여 임명된 자를 의미한다.
 “책임”이란 관련 법 조항에 의거하여 또는 따라서 자신에게 가해진 요건을 수행하고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만큼의 능력을 갖췄음을 의미한다.
 “관련공사”란 2015년 4월 6일 이전에 시작된 공사를 의미한다.

2. 본 규칙은 본 별표에 명시된 수정사항이 포함된 관련공사에 적용된다.

기존의 CDM 조정자 또는 원도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사

3.—(1) 본 항은 2016년 4월 6일 직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관련공사와 관련하여 본 규칙을 수정하여 적용한다.

(a) 건설관리규칙(2007)에 의거하여 공사에 대해 임명되어야 할 CDM 조정자 또는 원도급자가 아무도 임명되지 않음.

(b) 도급자가 둘 이상이거나 공사를 진행하는 도급자가 둘 이상일 것으로 합리적인 예상이 가능함. 그리고,

(c) 건설단계가 시작되었음.

(2) 5조는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3) 발주자는 하나의 설계자를 원설계자로 임명할 수 있음.

(4) 발주자는 2015년 4월 6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하나의 도급자를 원도급자로 임명해야 한다.

(5) 원도급자는 2015년 4월 6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본 규칙 12(1)조 및 12(2)조에 의거하여 건설단계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단계계획이 수립되게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는 건설단계계획이 건설전 단계 동안 그리고 건설현장을 구축하기 이전에 수립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6) 사적발주자 이외의 발주자는 원도급자가 본 별표 (5)호를 준수하게끔 보장해야 하며 4(5)(a)조에 명시된 발주자의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7) 만일 발주자가 원설계자를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 원도급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2015년 4월 6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12(5)조에 의거하여 보건안전파일을 작성한다. 여기서는 보건안전파일이 건설전 단계 동안 작성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b) 보건안전파일이 12(6)조에 의거하여 이따금 검토, 갱신 및 개정되도록 한다.

(8) 만일 발주자가 원설계자를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

(a) 4(5)(b)조 및 9(3)(b)조에서 원설계자를 언급한 것은 원도급자를 언급한 것으로 취급되며,

(b) 4(6)(a)조에서 명시된 발주자의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c) 12(7)조 및 13(5)조에 명시된 원도급자의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다.

(9) 사적발주자 이외의 발주자가 본 별표 (4)호에 의거하여 원발주자를 임명하지 못했을 경우, 발주자는 본 규칙에 명시된 원발주자로서의 의무를 본 항에서 수정된 바에 따라 완수해야 한다.

(10) 발주자가 사적발주자일 경우,

(a) 7(2)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b) 만일 발주자가 본 별표 (4)호에 의거하여 원발주자를 임명하지 못했을 경우, 건설단계를 통제하고 있는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원발주자가 된다.

기존의 CDM 조정자가 존재하는 공사

4.—(1) 본 항 및 5항과 6항은 만일 2015년 4월 6일 직전에 관련공사에 대한 CDM 조정자가 임명된 상태일 경우 적용된다.

(2) 본 항이 적용될 경우, 원설계자가 임명되거나 공사가 종료될 때 까지는 본 규칙의 목적상 CDM 조정자의 임명은 계속 효력을 발휘한다.

(3) 발주자는 공사가 2015년 10월 6일에 또는 그 이전에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엔 공사의 원설계자를 서면으로 임명해야 한다.

(4) CDM 조정자의 임명이 본 별표 (2)호에 따른 효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경우,

(a) CDM 조정자는 5항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b) 본 규칙 9(3)(b)조 및 12(7)조에 명시된 원설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는 CDM 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로 취급하며, 그리고,

(c) 본 규칙 13(5)조에 명시된 원설계자와의 협력 의무는 CDM 조정자와의 협력 의무로 취급된다.

경과규정 적용 기간 동안의 CDM 조정자의 의무

5.—(1) CDM 조정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a) 동일한 건설현장이나 인접한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공사와 관련이 있는 자와 본 규칙에 따른 의무를 지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이가 해당 의무나 기능을 완수하는데 필요한 정도까지 협력해야 한다.

(b) CDM 조정자가 다른 이의 통제 하에서 작업을 할 경우, 조정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보건 또는 안전 아니면 다른 이의 보건 또는 안전에 위험을 가할 공산이 클 것이라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통제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c) 다음의 사항을 촉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건설단계 계획 및 준비 기간 동안 보건안전조치의 조정을 위해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i) 공사의 건설전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간의 협력 및 조정. 그리고,

(ii) 일반예방원칙의 적용.

(d) 다음의 사항을 두고 원도급자와 협력해야 한다.

(i) 보건안전파일의 내용.

(ii) 원발주자가 건설단계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 그리고,

(iii) 건설작업의 계획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본설계.

(e) 건설(설계관리)규칙(2007) 10조에 의거하여 발주자로부터 CDM 조정자로 건설전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제공되었을 경우, 발주자가 본 규칙 4(4)조를 준수하도록 도와야

한다.

(f) 건설(설계관리)규칙(2007) 20(2)(b)조에 의거하여 정보가 이미 전달되었을 경우, 공사 진행을 위해 지명된 모든 설계자 및 도급자 또는 지명 대상으로 고려되는 모든 설계자 및 도급자에게 즉시 그리고 편리한 형태로 CDM 조정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통제하고 있는 건설 전 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g) 설계자들이 본 계약 9조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h) 설계 또는 설계 변화와 관련하여 건설단계 동안 설계자와 원도급자 간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i) 건설(설계관리)규칙(2007) 20(2)(e)조에 따른 보건안전파일이 아직 작성되지 못했을 경우, 본 규칙 12(5)조의 요건을 준수하는 보건안전파일을 작성해야 한다.

(j) 보건안전파일을 작업관련 사항 및 발생한 모든 변경사항을 고려할 수 있게끔 이따금 적절하게 검토, 갱신 및 개정해야 한다.

(k) CDM 조정자의 임명이 공사 종료 직전에도 계속 효력을 발휘할 경우, 공사 종료시 발주자에게 보건안전파일을 전달해야 한다.

(l) 원설계자가 임명되었을 경우, 임명 이후 가능한 한 빨리 CDM 조정자가 소유 중인 보건안전파일 및 관련 보건안전정보를 원설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2) CDM 조정자는 노무제공자가 설계작업이나 건설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치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된다. 단, 노무제공자가 해당 작업을 수행할 책임자이거나 책임자의 감독 하에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원설계자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되지 않는 의무

6.—(1) 본 규칙 5(1)(a)조 및 5(3)조에 명시된 의무는 본 별표 4(1)항에 언급된 공사의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2) 다음의 의무는 원설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별표 4(1)항에 언급된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a) 본 규칙 4(5)(b)조 및 (6)(a)조에 명시된 의무.

(b) 본 규칙 11조 및 12(3)조, 12(5)조, 12(6)조, 12(8)조, 12(10)조에 명시된 원설계자로서의 의무

(3) 만일 발주자가 별표 4(3)항에 따라 원설계자를 임명하지 못했을 경우, 발주자는 2015년 10월 6일 당일 및 그 이후부터 본 규칙 11조 및 12조에 명시된 원설계자로서의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도급자가 오직 하나뿐인 공사

7. 관련공사의 도급자가 오직 하나에 불과하고 건설단계가 시작되었을 경우, 도급자는 2015년 4월 6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본 규칙 15(5)조 및 15(6)조에 의거하여 건설단계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단계계획이 수립되게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는 건설단계계획이 건설현장을 구축하기 이전에 수립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잠정규정

8.—(1) 2015년 4월 6일 직전에 건설(설계관리)규칙(2007) 14(2)조에 의거하여 관련공사에 대

한 원계약자가 임명된 상태라면, 본 규칙의 목적상 해당 원계약자는 2015년 4월 6일 당일 및 그 이후부터 본 규칙 5(1)(b)조에 의거하여 임명된 것으로 취급된다.

(2) 본 규칙의 목적상 2015년 4월 6일 당일 및 그 이후부터는,

(a) 건설(설계관리)규칙(2007) 20(2)(e)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관련공사에 대한 보건안전파일은 본 규칙 12(5)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보건안전파일로 취급된다.

(b) 건설(설계관리)규칙(2007) 23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관련공사에 대한 건설단계계획은 본 규칙 12(1)조 또는 15(5)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건설단계계획으로 취급된다.

(c) 건설(설계관리)규칙(2007) 10조에 의거하여 제공된 관련공사에 대한 건설전 정보는 본 규칙 4(4)조에 의거하여 제공된 건설전 정보로 취급된다.

(d) 건설(설계관리)규칙(2007) 21조에 의거하여 제공된 관련공사에 대해 이루어진 신고는 본 규칙 6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신고로 취급된다.

별표 5

38조

개정본

법령명	참조	개정범위
공장법(1961)(Factories Act 1961)	1961 c. 34 ^(a)	176(1)절의 "건축공사(building operation)" 및 "건축건설작업(work of engineering construction)"의 정의에서 "2007 (S.I. 2007/320)"이 "2015"로 대체됨.
작업장 건강보건복지규칙(1992)(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S.I. 1992/3004 ^(b)	3(1)(b)조에서 "2007"이 "2015"로 대체됨.
압축공기 작업규칙(1996)(Work in Compressed Air Regulations 1996)	S.I. 1996/1656 ^(c)	2(1)조의 "2007 규칙"의 정의에서 두 번 등장하는 "2007"이 "2015"로 대체됨. 3(1)조에서 "2007"이 "2015"로 대체되고 "2(3)"이 "6(1)"로 대체됨. 5(3)조에서 "2007"이 "2015"로 대체됨. 13(2)(a)조에서 "규칙(2007) 39조, 40조 및 44(3)조"가 "규칙(2015) 30조, 31조 및 35(3)조"로 대체됨. 13(2)(d)조에서 "규칙(2007) 39(1)조"가 "규칙(2015) 30(1)조"로 대체됨. 14(1)조에서 "규칙(2007) 41조"가 "규칙(2015) 32조"로 대체됨.
철도안전(기타규정)규칙(1997)(Railway Safety (Miscellaneous Provisions) Regulations 1997)	S.I. 1997/553 ^(d)	2(1)조의 "건설작업(construction work)"의 정의에서 "2007"이 "2015"로 대체됨.

보건안전(집행권자)규칙(1998)(Health and Safety (Enforcing Authority) Regulations 1998)	S.I. 1998/494 ^(e)	2(1)조의 "건설작업(construction work)" 및 "도급자(contractor)"의 정의에서 "2007"이 "2015"로 대체됨. 2A(5)(a)조에서 "2007"이 "2015"로 대체됨. 별표 2의 4(a)(i)항에서 "2(3)"이 "6(1)"로 대체되고 "2007"이 "2015"로 대체됨.
작업장비 지급 및 사용 규칙(1998)(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 1998)	S.I. 1998/2306 ^(f)	6(5)(e)조에서 "31(4) 또는 32(2)"가 "22(4) 또는 23(2)"로 대체되고 "2007"이 "2015"로 대체됨.
가스안전(설치 및 사용)규칙(1998)(Gas Safety (Installation and Use) Regulations 1998)	S.I. 1998/2451 ^(g)	2(4)(d)조에서 "2007"이 "2015"로 대체됨.
고공안전규칙(2005)(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	S.I. 2005/735 ^(h)	2(1)조의 "건설작업(construction work)"의 정의에서 "2007"이 "2015"로 대체됨.
규제개혁(화재안전)명령(2005)(Regulatory Reform (Fire Safety) Order 2005)*	S.I. 2005/1541 ⁽ⁱ⁾	25(2)(a)조에서 "2007"이 "2015"로 대체되고 "46(1)"이 "36"로 대체됨.
보건안전(철도 및 기타유도수송시스템에 대한 집행권자)규칙(2006)(Health and Safety (Enforcing Authority for Railways and Other Guided Transport Systems) Regulations 2006)	S.I. 2006/557 ^(j)	2(1)조의 "건설작업(construction work)" 및 "도급자(contractor)"의 정의에서 "2007"이 "2015"로 대체됨.
REACH 시행규칙(2008)(REACH Enforcement Regulations 2008)*	S.I. 2008/2852	별표 3의 Part 3의 1(d)(i)(aa)항에서 "2(3)"이 "6(1)"로 대체되고 "2007"이 "2015"로 대체됨.
산업재해, 직업병 및 위험발생보고 규칙(2013)(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2013)	S.I. 2013/1471	2(1)조의 "건설현장(construction site)"의 정의에서 "2007"이 "2015"로 대체됨.

^(a) S.I. 1996/1592 및 S.I. 2007/320에 의해 개정되었음.

^(b) S.I. 2007/320 및 S.I. 2014/3248에 의해 개정되었음(후자는 2015년 4월 6일자로 발효됨).

^(c) S.I. 2007/320에 의해 개정되었음.

^(d) S.I. 2007/320에 의해 개정되었음.

^(e) S.I. 2007/320 및 S.I. 2014/469에 의해 개정되었음.

^(f) S.I. 2007/320에 의해 개정되었음.

^(g) S.I. 2007/320에 의해 개정되었음.

^(h) S.I. 2007/320에 의해 개정되었음.

⁽ⁱ⁾ 25(2)조는 별표 12의 Part 5에 의해 에너지법(2013)(c.32)에 삽입되었음.

^(j) S.I. 2007/320 및 S.I. 2008/2323에 의해 개정되었음.

주석서

(주석서는 본 규칙의 일부로 취급되지 않음.)

1. 본 규칙은 건설(설계관리)규칙(2007)(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07)(S.I. 2007/320)(이하 "건설(설계관리)규칙(2007)"이라 함)을 폐지하면서 수정사항을 첨가한 후 다시 제정된 것이다. 본 규칙은 그레이트브리튼 내에서 임시 또는 이동식 건설현장에서의 최소한의 안전보건요건의 이행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Council Directive 92/57/EEC)(OJ No L245, 26.8.92, p6)(이하 "지침"이라 함)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며 (지침 89/391/EEC의 16(1)조에 명시된 의미에 속하는 8번째 개별 지침), 단 특정 위험 또는 환경과 관련한 기타 보건안전규칙에 의해 이행되는 지침의 부속서에 명시된 특정 기술적 요건은 제외한다. 본 규칙에는 고공안전규칙(2005)(Work at Height Regulations 2005)(S.I. 2005/735) 및 작업장 건강보건복지규칙(1992)(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S.I. 1992/3004)이 포함된다.

2. 본 규칙의 Part 2는 본 규칙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Part 3은 여러 가지 보건안전상의 의무 및 역할을 규정하며, 구체적으로는 전반적인 의무, 원설계자의 의무, 원도급자의 의무, 설계자 및 도급자의 의무 등이다. Part 4는 모든 건축현장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하며, 대체로 건설(설계관리)규칙(2007)로부터 거의 변경된 바 없다. Part 5는 총칙이 열거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노동연금부 장관에 의한 본 규칙의 검토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3. 건설(설계관리)규칙(2007)으로부터의 주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a) 본 규칙은 건설공사의 모든 발주자에게 적용되며, 사업의 진행 또는 진척 과정에서의 사람의 행동 여부는 불문에 부친다(2(1)조).

(b) 건설 이전의 고고학적 조사는 공사작업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2(1)조).

(c) CDM 조정자의 역할은 삭제되었으며 발주자의 의무(4조) 및 전반적인 의무(8조)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무가 재구성되었다.

(d) 발주자는 공사를 진행하는 도급자의 수가 둘 이상일 경우 또는 둘 이상이 될 것으로 합당한 예상이 가능할 경우 공사에 대한 원도급자 뿐만 아니라 원설계자도 임명해야 한다(5조). 건설(설계관리)규칙(2007)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역할에 대한 임명은 신고 대상 공사의 경우에만 요구되었다.

(e) 신고의무는 이제 발주자의 몫이며 신고요건은 상향되었다(6조).

(f) 발주자가 사적발주자일 경우, 사적발주자의 의무의 대부분은 도급자, 원도급자 또는 원설계자에 의해 수행된다(7조).

(g) 원설계자의 의무는 11조 및 12조에 명시되어 있다.

(h) 원도급자의 수정된 의무는 12조부터 14조까지에 명시되어 있다.

(i) 도급자의 수정된 의무는 15조에 명시되어 있다.

(j) 경과규정은 별표 4에 명시되어 있다.

(k) 노동연금부 장관은 본 규칙 3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칙의 검토를 수행한다.

4. 건설(설계관리)규칙(2007)에서 본 규칙으로 변경된 역할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바로 원설

계자의 역할이다. 해당 역할은 공사준비단계에서의 보건안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으로, 지침 3.1조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며, 과거에는 CDM 조정자의 역할에 따라 수행된 것이다. 원설계자는 공사에서 CDM 조정자의 역할에 비해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맡으며, 그 이유는 원설계자는 공사의 건설전 단계에 대한 통제력을 지닌 설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5(1)(a)조). 건설전 단계에는 건설공사에 대한 모든 설계 및 준비작업이 포함된다(2(1)조). 원설계자는 공사의 건설전 단계의 전반적인 계획, 관리 및 감시와 함께 건설전 단계와 관련된 모든 보건안전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11(1)조).

5. 별표 4는 기존 공사에 관한 경과규정을 제공한다. 기존의 공사에 CDM 조정자가 존재할 경우, 본 규칙이 발효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설계자가 임명되어야 한다. 단, 발효일 이전에 공사가 종료될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별표 4의 4항). 이러한 임시기간 동안 기존의 CDM 조정자는 별표 4의 5항에 명시된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6. 원도급자의 역할은 지침 3.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공사이행단계에서의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을 완수한다. 원도급자의 핵심의무는 건설(설계관리)규칙(2007)에 의거하여 부과된 의무로부터 약간만 수정된 것이며, 건설(설계관리)규칙(2007)에 의거하여 기존의 공사에 대해 임명된 원도급자는 본 규칙에 의거하여 원도급자로 임명된 것과 마찬가지로의 대우를 받을 것이다(별표 4의 8항).

7. 본 규칙이 사업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면적 영향평가가 준비되어 있다. 본 문서의 사본 및 지침의 이행과 관련된 전환서(transposition note)는 상하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법제정 취지 설명서(Explanatory Memorandum)에 첨부되어 있다. 이들 문서는 www.legislation.gov.uk에서 본 규칙과 함께 입수 가능하다.